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 부 경 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12. 21 . 평창군수(도시경제과장)
- 나. 회부일자 : 1998. 12 . 29 .
- 다. 상정일자 : 1998. 12. 29. 제62회평창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2. 제 안 이 유

- 현행 상수도 요금은 톤당 478.4원으로 총괄 생산원가 1,050.4원에 훨씬 미달되어 매년 10억 9천여만원의 결손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 최근 우리지역에서 동계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되고 봉평일대가 문화관광부로 부터 관광특구로 지정되는등 상수도 시설의 확장이 시급한 반면, 재원악화로 인하여 대부분 재원을 기채로 충당한 결과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악순화를 거듭하고 있음에 따라,
-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재정 적자폭을 최소화 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 가. 수용가의 물가부담과 IMF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평균 40%인상
- 나. 물소비량이 가장많은 가정용중예거 구간 10 ~ 20m³(기본구간) 과 11 ~ 20구간까지의 누진율을 개선하여 절수유도

- 다. IMF로 인한 지역상권 부양과 경기회복을 위해 영업용의 인상분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소비성향이 짙은 옥탕2종의 인상분을 상대적으로 높임.
- 라. 감면 근거가 미약하였던 모범음식점, 양로원, 경로당, 노인회관 영·유아원, 유치원등 공공시설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
- 마. 요금부과 실적이 전무했던 전용공업용의 가격도 합리적으로 조정

4. 검토 의견

가. 먼저 관련법을 검토하여 보면,

-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업자인 경우는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

나. 최근 신규 상수도시설에 대한 대부분 투자는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기체에 의존하는 현실과, 요금징수액 대비 생산원가가 매우 높은 실정을 감안할 때 인상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이 되나,

다. 최근 IMF로 인한 경기위축과 가계경제 악화로 인하여 정부가 물가인상 지수를 한자리로 고수하려 하고 있는점, 공공기관이 '99년도 공공요금을 누구나 할 것없이 대폭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이로 인한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